

## 노무0400 임원연봉규정

2001. 12. 19 제정  
 2002. 12. 20 부분개정(1차)  
 2003. 12. 30 부분개정(2차)  
 2004. 12. 29 부분개정(3차)  
 2005. 7. 27 부분개정(4차)  
 2005. 12. 29 부분개정(5차)  
 2006. 12. 20 부분개정(6차)  
 2007. 12. 26 부분개정(7차)  
 2008. 10. 29 부분개정(8차)  
 2009. 7. 21 부분개정(9차)  
 2011. 2. 25 부분개정(10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이 규정은 거래소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수의 종류)** 보수의 종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한다.

### 제2장 기본연봉

**제4조(기본연봉)** ① 임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산기간 및 지급)** ① 기본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기본연봉의 지급은 별표 1에서 정한 기본연봉을 12분의 1로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2007. 12. 26 개정)

③ (2007. 12. 26 삭제)

**제6조(보수계산의 특례)** ① 임원으로 신규 선임되는 월의 기본연봉은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임원으로 재임중 신분 변경시에는 각각의 신분에 따른 기본연봉을 일할 계산한다.

③ 임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월분의 기본연봉을 일할 계산한다.

④ 임원이 휴직하였을 때에는 그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일할계산은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10원 미만 단수는 반올림한다.

### 제3장 성과급

**제7조(성과급 지급)** ① 임원의 성과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결정된 성과급 지급 기준연봉에 정부 경영평가 결과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2009. 7. 21 개정)

② (2005. 7. 27 삭제)

③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미지급된 성과급은 전액 지급한다. 다만, 경영실적 저조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2008. 10. 29 개정)

**제8조(성과급 지급시기)**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경영평가결과 확정 이후 3월 이내에 지급한다.(2008. 10. 29 개정)

**제9조(성과급 계산방법)** ① 임원으로 신규 선임되는 경우의 성과급은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고, 퇴직자의 당해연도 성과급은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2008. 10. 29 개정)

② 퇴임시 성과급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산정하여 지급한다.(2008. 10. 29 개정)

1.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성과급은 퇴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한다.

③ (2008. 10. 29 삭제)

## 제4장 퇴직금

**제10조(퇴직금 지급)** 만1년 이상 근속한 임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1조(퇴직금 산정)** ①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당해 임원에게 퇴직일로부터 최종 1년간에 지급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의 12분의 1로 한다.

③ 근속연수의 계산은 임원의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하되,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2008. 10. 29 개정)

④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4항 단서에 정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⑤ 퇴직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지급제한)**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킴으로써 거래소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령권자)** 퇴직금의 수령권자는 퇴직자로 하되 사망시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재산상속권자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 07.1.1부터 '07.12.31까지 기본연봉 및 성과급 산정기준은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